



특허청

# 보도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 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3. 2. 1.(수) 14:00	배포 일시	2023. 2. 1.(수) 08:30	
담당 부서	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	책임자	서기관	전익수 (042-481-5761)
		담당자	사무관	이우정 (042-481-822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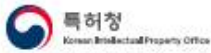
## 제1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우수조정위원 표창 수여식 개최

-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중 분야별 우수 조정위원 3인 선정 -

- 특허청(청장 이인실)은 2월 1일(수) 오후 2시, 특허청 서울사무소(서울 강남구)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과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제도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3인에 대한 첫 표창 수여식이 개최되었다고 밝혔다.
- 이번 포상은 신속·경제적인 지식재산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조정위원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수상자 3인은 상표·디자인 분야 최효선 변리사(광개토 특허법률사무소), 특허 분야 권혁성 변리사(특허법인 이룸리온), 법률 분야 기은아 변호사(다솔 특허법률사무소)로,
- 69명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중 조정 성과, 조정 난이도, 제도 개선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되었다.
-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에서 산업재산권(특허·상표·디자인·실용신안권) 및 직무발명, 영업비밀, 부정경쟁행위 등의 분쟁을 신속·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로,

- 조정 신청을 하면, 별도의 신청 비용 없이, 3개월 내에 전문가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,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, 개인·중소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.
-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수분쟁조정위원 표창 수여식에서 “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의 지난해 조정성립률이 49%에 이르는 등 실효적인 지식재산 분쟁해결에 크게 기여했다”고 강조하면서,
  - “이는 적극적으로 당사자와 소통하며, 합의를 이끌어 낸 조정위원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”이라고 감사를 표했다.
  - 아울러, “특허청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분쟁 해결을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- 한편, 산업재산권, 직무발명, 영업비밀,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·개인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([www.koipa.re.kr/adr](http://www.koipa.re.kr/adr))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,
  -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(1670-9779)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
※ 행사 사진은 행사 직후 배포 예정



“ 특허, 상표, 영업비밀 등의 분쟁은?  
이제 조정으로 해결하세요!  
**산업재산권  
분쟁조정제도** ”



☞ 산업재산권 분쟁제도란?

산업재산권 분쟁에서 소요되는 비용·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[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]에 양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

☞ 신청분야

- 산업재산권 분쟁 (특허·상표·영업비밀·디자인)
- 직무발령 관련 분쟁
- 영업비밀 관련 분쟁
-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

☞ 산업재산권 분쟁제도의 장점

- 신속한 분쟁해결 (3개월 이내)
- 간편 절차 신청비용 무료
- 절차비공개 (비밀 보장)
- 전문가의 원만한 분쟁해결 지원

☞ 신청자격

- 산업재산권자 실시권자·사용권자
- 직무발령자 영업비밀 보유자
- 부정경쟁행위의 분쟁 당사자
- 관리실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

☞ 신청 방법



홈페이지 [www.kopia.go.kr/adr](http://www.kopia.go.kr/adr)  
우편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 
T 1670-9779 F 02-553-5865 E-mail [ip.adr@korea.kr](mailto:ip.adr@korea.kr)

☞ 산업재산권 분쟁제도의 효력

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



## 붙임 2

## 우수 조정위원 분쟁조정 사례

조정위원	조정사례	
최효선 변리사 (상표· 디자인)	<b>【형사소송까지 이어진 디자인 분쟁, 조정으로 해결】</b>	
	분쟁 당사자	A(디자인권자), B사(소기업)
	분쟁 상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A는 최근 SNS 등에서 유행하는 차량용품의 디자인권자로, 유통업체 B가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을 유통·판매중임을 알게 되어, B를 형사고소</li> <li>▶ B사는 해당 제품 구매 당시 디자인권 침해 제품인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며,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는 있으나, A와 B사간 침해 제품 및 피해액에 대한 이견 지속</li> </ul> ⇒ A는 합리적인 손해배상, B사는 원만한 종결을 원하였으나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며 양측의 감정대립이 심해지면서 <b>분쟁 장기화</b> 우려
조정 성과	검찰-조정 연계제도를 통해 분쟁조정위로 연계되어, 조정위원이 이견을 조율하여 판매중지 및 소정의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냄	
권혁성 변리사 (특허)	<b>【오랜 기간 근무한 직원과 기업 간 분쟁, 법적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합의】</b>	
	분쟁 당사자	C사(연구기관), D(전 직원)
	분쟁 상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D는 중소기업 C사의 전 직원으로, 오랜 기간 재직하며, 여러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D는 퇴사 이후, 타 기업 입사 후 'ㄱ'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등록</li> <li>▶ C사는 'ㄱ' 기술이 당사 재직 당시 연구분야와 관련되어 있어,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며, 해당 특허권에 대한 지분양도를 원함</li> </ul> ⇒ D는 'ㄱ' 기술은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나, 오랜 기간 재직한 C사에 애정이 있어, 법적분쟁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나, 의견조율에 한계가 있어, <b>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위기</b>
조정 성과	D의 연구논문 및 성과 등을 토대로, 재직 당시 업무범위를 추정,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여, 해당 특허권의 10% 지분양도를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냄	
기은아 변호사 (법률)	<b>【4년간 지속된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, 68일 만에 해결】</b>	
	분쟁 당사자	E사(중견기업), F사(소기업)
	분쟁 상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E사는 유명 식음료 업체로, F사가 당사의 제품 외관을 모방한 장난감을 제조·판매하는 것을 발견, '18년, '19년 6월과 12월 총 세 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판매중지를 요청하였으나, F사가 판매를 지속하자, '20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진행되어 8개월 이상 다툼이 지속 중</li> <li>▶ F사는 해당 장난감은 E사의 식음료 디자인과 일부 차이가 있어, 법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, E사의 고소 이후 제품 판매를 중단</li> </ul> ⇒ E사와 F사는 오랜 기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피로감이 높은 상황으로, <b>신속한 분쟁해결을 원함</b>
조정 성과	검찰-조정 연계제도를 통해 분쟁조정위로 연계되어, 양측의 이견 조율을 통해 68일 만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	

※ 동 사례는 우수 분쟁조정 사례를 토대로 익명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임